

임금의 사회적 재구성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어느 포도밭 주인 이야기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한 일꾼에게도, 오전 9시부터 일한 일꾼에게도, 심지어 오후 5시부터 일한 일꾼에게도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갈 때 똑같이 1테나리온을 지급했다. 불만을 토로하는 먼저 온 일꾼에게 말한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영국의 사회사상가 존 러스킨은 성경에 나온 이 일화를 빌어 우리에게 ‘임금’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 포도밭에 비록 늦게 왔더라도 그 일꾼이 자신과 가족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비용은 먼저 온 자와 같다는 것이다. 러스킨은 그의 책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Unto This Last)』에서 실제 일을 한 시간이 얼마든, 그 일이 서투르든 아니든, 누구든지 일을 하였다면 ‘생존하고 생활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실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에서 보자면 최저임금이다. 일을 하였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야 할 최저선의 임금 말이다.

최근 생존하고 생활하기에 필요한 임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들린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가 현재 10달러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약 1만 7천 원)로 인상키로 했다. 뉴욕 주도 2021년까지 뉴욕 교외 지역에게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적용키로 의회와 합의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12달러(힐러리 클린턴), 15달러(버디 샌더스)로 연방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영국은 액수 상향조정

만이 아니라 법정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을 도입했다. 시간당 6.70파운드(약 1만 900원)이던 최저임금을 올 4월 1일부터 50펜스 인상한 7.20파운드(1만 1,700원)로 정했고, 25세 이상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법정생활임금’이라고 명명했다. 러시아도 올 7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월 7,500루블(약 12만 6,300원)로 정했다. 현행 최저임금(6,204루블)과 견줘 20% 높은 수준이고, 지난 1월 4% 인상에 이어 올 들어 2번째 인상이다. 일본도 올해부터 매년 3%씩 최저임금을 올려 시간당 1,000엔(1만 490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각국 정부의 일차적 목표는 경기부양에 맞춰져 있다. 저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지출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불평등 완화와 근로자 간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도 그 흐름에서 비껴 있지 않다. 여야 모두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20년까지 9천 원(인상효과)~1만 원으로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최저임금 1만 원’ 캠페인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7일 시작된 2017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더욱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호 기획특집 주제는 최저임금이다. ‘법정’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 법정‘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영국 사례를 다루고 있다. 전자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노사관계 주체들의 역할, 후자는 최저임금과 세제·사회복지제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독일에서는 그동안 단체교섭 당사자들이 국가 개입 없이 최저임금 설정뿐 아니라 시행 및 감독을 책임졌으나, 2015년 1월부터 정부 역할이 커졌다.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혼합)’형 최저임금제하에서도 노사 당사자들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정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라 설립된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단체교섭 당사자인 노사단체에 의해 임명되고,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학계 전문가의 의결권이 없다. 또한 노사가 공동으로 제안하는 최저임금 인상분은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 인상분을 기준으로 삼는다. 법정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지만 노사 자율주의 전통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사례는 저임금층의 생활수준 향상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최저선에서 보장되어야 할

임금과 세제 및 복지제도가 어떻게 조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법정생활임금제 도입은 획기적인 시도로 보이지만 그 수준을 2020년까지 중위소득(median earnings)의 60%로까지 높이겠다는 것을 제외하면 최저선 임금의 사회적 재구성과 같은 긍정적 의미의 변화를 찾기 어렵다. 더 문제는 법정생활임금제 도입이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 즉 '낮은 임금, 높은 세금, 높은 복지수준'이 아닌 '높은 임금, 더 낮은 세금, 더 낮은 복지수준'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 중 하나라는 점이다. 사회적 재분배 기능보다는 임금결정에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 보수당 정부하에서 계획된 복지축소 정책이 집행될 경우 저임금층 가구는 법정생활임금제에 의한 소득인상효과보다 각종 복지혜택 축소에 따른 더 큰 손실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 보수여당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한 소득분배 상황 개선을 꾀하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교해서 살펴볼 대목이다.

다시 포도밭 얘기다. 현대적 의미에서 보자면 포도밭 주인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와도 맞닿아 있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헌법 제32조제1항). 고용 증진, 즉 고용을 유지시키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누구든 일을 하였다면 적어도 최저수준, 혹은 적정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이때 임금은 포도밭 주인이 직접 지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사관계 주체들의 참여 속에서, 세제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재구성된 소득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KL**